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자동차종합검사의시행등에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배터리 등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의 고전원배터리 등에 대한 검사기준을 개선하여 도로운행 안전을 확보하고, 지정정비사업자의 자동차 검사진로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수검자 불편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자동차 검사진로 개선(별표 2)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의 검사업무 범위 및 시설기준 중 검사 전용진로는 1개로 하되, 총 중량 5.5톤을 초과하는 대형차검사 진로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나.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 서식 개선(별지 제2호 서식)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개선하여 전기차 배터리 상태의 검사항목을 서식에 추가하는 등 고전원배터리 진단 강화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중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자동차기능 종합진단 등)”을 “(자동차기능종합진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서”를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로, ““자동차종합검사결과표등”이라”를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자동차종합검사결과표등”을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중 “자동차종합검사결과표”를 각각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재검사기간”을 “제1항에 따른 재검사기간”으로 한다.

1) 최고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

제15조제1호 중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을 “자동차기능종합진단”으로 한다.

제21조 중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을 “자동차기능종합진단”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본문 중 “분야 또는”을 “분야 진로 또는”으로, “곳에

만”을 “곳 이상에”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 후단 중 “본다”를 “본다(단, 총중량 5.5톤을 초과하는 대형차를 검사하기 위한 진로 1개 추가 설치 가능)”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4호가목 중 “등록번호판과”를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자동차 전체 모습을 촬영할 수 있어야 하며, 등록번호판의 등록번호가 식별될 수 있도록 선명한 화질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

검사일자: 년 월 일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 명		차 명	
차 대 번 호		원동기형식		최초등록일	
다음 종합검사일 ⁽¹⁾		재검사 기간 ⁽²⁾		주행거리	km

- 1) 다음 검사는 위의 다음 검사일 기준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2) 재검사 대상 자동차는 위의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재검사 기간 경과 시 자동차검사 미수검 과태료와 검사 재신청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단항목				안전진단기준(검사기준)		진단결과	진단의견	검사원	
조향계통		앞바퀴 정렬		옆방향 미끄러짐 정도 (1m 주행에 5mm 이내)					
		조향계통 설치상태 등		변형·느슨함·누유여부 파워스티어링 오일량					
주행계통		차축·타이어·휠		외관 손상·변형·돌출여부 타이어 상태					
		변속기 추진축 등		변속기 오일 오염도(진단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함) 추진축·등속조인트(손상·변형) 클러치 유격상태					
		뒷바퀴 정렬(옆 방향 미끄러짐)							
제동계통 (브레이크 시스템)		제동력	앞축	전	앞축무게(kg)의 50% 이상	%(측정값: kg)			
				후	앞축무게(kg)의 50% 이상				
			뒷축	전	뒷축무게(kg)의 20% 이상	%(측정값: kg)			
				후	뒷축무게(kg)의 20% 이상				
			전체 브레이크		전체 무게(kg)의 50% 이상	%(측정값: kg)			
			주차브레이크		전체 무게(kg)의 20% 이상	%(측정값: kg)			
		좌·우 차이 (편차)	앞축	전	앞축무게(kg)의 8% 이하	%(: kg)			
				후	앞축무게(kg)의 8% 이하	%(: kg)			
			뒷축	전	뒷축무게(kg)의 8% 이하	%(: kg)			
				중	뒷축무게(kg)의 8% 이하	%(: kg)			
		후	뒷축무게(kg)의 8% 이하	%(: kg)					
제동계통 설치상태 등				견고한 설치·손상·오일누출 배력(booster)장치의 작동상태					
				디스크·패드상태					
등화장치		전조등	광도	좌/우	3,000cd 이상		좌측밝기: cd		
					우측밝기: cd				
			진폭	좌	설치높이 ≤ 1.0m	-0.5% ~ -2.5%	높이: m		
		우		설치높이 > 1.0m	-1.0% ~ -3.0%	높이: m			
		기타 등화		등화장치 점등 및 설치상태 등					
배출가스		휘발유 LPG		검사방법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공기과잉률(λ)					
		경유		검사방법					
				매연					
				최대출력					
엔진회전수									
배기,소음 발생방지장치		배기관·소음기·촉매장치의 손상,변형 등이 없을 것							
계기계통		속도계		40km/h일 때(32 ~ 44.4km/h)					
		계기장치		운행기록계·최고속제한장치 설치 및 작동여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종합검사의 실시) ① ~ ③ (생 략)		제5조(종합검사의 실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 사지정정비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 에는 그 결과를 <u>별지 제1호서식</u> <u>의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u> 에 기 록하고, 이를 2부 작성하여 1부 는 검사신청인에게 발급[제20조 에 따라 설치된 자동차검사와 관련된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 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발급하 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1부는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 다. 다만, 그 결과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 다.		④ ----- ----- ----- ----- <u>별지 제2호서식</u> <u>의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u> ---- ----- ----- ----- ----- ----- ----- ----- ----- -----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6조(<u>자동차기능 종합진단 등</u>)		제6조(<u>자동차기능종합진단 등</u>) ①		
①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 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종합검 사를 할 때 검사신청인에게 중		----- ----- -----		

합검사 결과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검사항목과 중요부품에 대하여 진단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에 같음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생략)

제7조(재검사의 신청 및 실시 등)

① 제5조제3항 전단에 따라 종합검사 실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 내에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5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서(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 종합검사결과표등”이라 한다)을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

----- . <후단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재검사의 신청 및 실시 등)

① -----

-----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서-----
----- “자동차 기능종합진단서”라-----
----- .

1. -----

기간 내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
을 받은 경우: 부적합 판정
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 최고속도제한장치의 미
설치, 무단 해체·해제
및 미작동

2) (생략)

나. (생략)

2.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
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
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
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종
합검사결과표등에 부적합 사유
를 정비한 부분과 자동차등록번
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
다)이 함께 보이는 전체 사진을
첨부하여 자동차검사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통해 재검사를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대행
자 또는 종합검사이정정비사업

--

가. -----

1) 최고속도제한장치의 미
설치(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

2)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자동차기
능종합진단서-----

자가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통하여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
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
다.

④·⑤ (생략)

⑥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 판정
을 받은 자동차는 자동차종합검
사결과표등을 받은 날에 종합검
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종합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
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신청하
지 않은 경우(재검사기간 내에
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였으
나 그 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⑧ (생략)

제15조(종합검사대행자의 업무
등) 종합검사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검사의 기준·방법 연구
및 자동차기능 종합진단 기술

----- 자동차기능종합진단
서를-----

---.

④·⑤ (현행과 같음)

⑥ -----
----- 자동차기능중
합진단서를-----
-----.

⑦ -----

-----제1항에 따른 재검
사기간 -----

-----.

⑧ (현행과 같음)

제15조(종합검사대행자의 업무
등) -----
-----.

1. -----
-- 자동차기능종합진단 ----

개발 등	-----
2. ~ 7. (생략)	2. ~ 7. (현행과 같음)
제21조(종합검사 결과자료 전산 관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 차의 종류, 사용연료, 제작연도, 장치 등의 구분기준에 따라 종 합검사 결과와 <u>자동차기능 종합 진단</u> 결과자료를 분석할 수 있 도록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종합검사 결과자료 전산 관리) ----- ----- ----- ----- <u>자동차기능종합진 단</u> ----- -----.

종합검사의 시설·장비·인력기준(제14조 관련)

1. 종합검사 시설기준

구 분		설 치 기 준	
		종합검사대행자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
- 생 략 -			
기타	검사수수료	사업장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수검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	검사수수료를 게시해야 한다.	
	표지판 설치	사업장의 주출입구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질 및 내용으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장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비고

1. 통합형은 1개의 검사진로에 모든 검사기기를 배열하는 방식이며, 분리형은 자동차안전 분야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로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검사진로를 구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2. 피트 또는 리프트는 차대동력계 검사 전에 반드시 관능 및 기능검사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분리형인 경우는 자동차안전 분야 진로 또는 자동차 배출 가스 정밀검사 분야 진로 중 한 곳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안전 분야 진로에만 피트 또는 리프트를 설치한 경우 배출가스 검사(재검사를 포함한다) 수행 전 피트 또는 리프트 위에서 촬영용 카메라로 촬영된 사진에 검사일, 시간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3.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진로는 1개 진로로 한정한다. 이 경우 분리형은 1개 진로로 본다(단, 총 중량 5.5t 초과 대형차 검사 1개 진로를 추가 설치 가능)
4. 리프트는 자동차의 진입·진출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5.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리프트를 설치하여 모든 자동차를 검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리프트와 함께 피트를 설치해야 한다.

6. 검사진로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로 허가받아 사용승인된 건축물이어야 한다.

7. 위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검사시설의 기준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및 별표 18을 준용한다.

2. 검사장비

가. 안전검사 분야: 종합검사대행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을 준용하고,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을 준용하되, 나목의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와 중복되는 검사장비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장 비 및 시 설
1) 휘발유자동차배출가스(일산화탄소·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2) 경유자동차배출가스(질소산화물)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경유자동차 질소산화물 검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3) 부분유량채취방식 광투과식매연측정기 1대 이상
4) 교정용 표준가스(산소·일산화탄소·탄화수소·이산화탄소 및 질소산화물) 1조 이상
5) 교정용 표준필터 1조(40%·60% 및 80%) 이상
6) 소형 차대동력계(차량 총중량 5.5톤 이하 자동차 부하검사용)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7) 대형 차대동력계(차량 총중량 5.5톤 초과 자동차 부하검사용)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 8) 엔진회전속도계 2조 이상(휘발유·가스·알코올 자동차용, 경유자동차용 각 1조 이상)
- 9) 검사장면 촬영용 카메라
- 10) 매연 포집시설
- 11) 엔진전자제어 진단기 1조 이상

비고

1. 검사장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정도검사 및 교정용품의 검정·교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는 총중량이 5.5톤 이하인 자동차에 대하여 부하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려면 소형 차대동력계를, 총중량이 5.5톤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하검사를 시행하지 않으려면 대형 차대동력계를 각각 갖추지 않을 수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는 대형 차대동력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3. 검사장비의 구성 및 성능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검사장비는 관능 및 기능 검사장비와 배출가스 검사장비로 구성되고, 별도의 입·출력기를 구비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나. 관능 및 기능 검사장비는 검사 결과의 입·출력과 자료의 검색이 가능하여야 한다.
 - 다. 배출가스 검사장비는 차대동력계·배출가스분석기·광투과식 매연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등이 하나의 체계로 구성되어야 하고, 배출가스 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제97조에 따른 정밀검사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주제어장치에 설치된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 수행되어야 한다. 1개의 배출가스 측정기로 휘발유자동차배출가스와 경유자동차배출가스를 모두 검사할 수 있는 때에는 배출가스 측정기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개별 측정기는 검사장비 주제어장치와 실시간으로 통신이 가능하여야 하고, 검사 방법별 검사 모드, 검사 결과의 입·출력, 검사 결과의 판정, 검사장비의 정도관리 등이 자동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 등이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 주전산기로 실시간 송신·저장되어야 한다. 다만,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 주전산기의 장애로 인하여 검사 결과 등의 실시간 전송이 곤란한 경우에는 장애가 복구된 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마. 검사장비 주제어장치는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 주전산기로부터 검사에 필요한 자료 검색, 검사 결과자료의 입·출력이 가능하되 배출가스 측정값의 임의 수정이 불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에 필요한 자동차의 제원 등은 필요한 경우에는 수동 입력 또는 수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4. 검사장면 촬영용 카메라는 해당 자동차의 검사가 적절하게 수행되는지를 기록·전송하기 위한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가. 카메라는 배출가스 검사 수행과 동시에 작동되어 자동차 뒷부분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자동차 전체 모습을 촬영할 수 있어야 하며, 등록번호판의 등록번호가 식별될 수 있도록 선명한 화질의** 검사장면이 2장 이상 촬영되어야 한다.

나. 촬영된 화면은 검사 종료 후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 주전산기로 전송·저장되어야 한다.

5. 매연 포집시설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할 때 매연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동차 배기관에서 직접 포집하여 정화 후 배출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매연 포집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매연 농도 40% 이하이어야 한다. 매연 농도는 부분유량채취방식의 광투과식 매연 측정기로 3회 측정하여 평균한 값으로 한다.

6.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검사장비는 소형 차대동력계 1조와 대형 차대동력계 1조로 한정한다.

7. 부하검사 대상 자동차에 대하여 관능 및 기능 검사 전에 정지가동상태에서 무부하 급가속의 방법으로 소음기의 매연을 제거하려는 경우 사전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무부하 급가속을 하는 사유와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부하) 등을 설명하고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매연 포집장치를 이용하여 매연을 포집하여야 한다.

3. 기술인력

가. 구분 및 자격·직무

구 분	자 격	직 무
종합검사 책임자	종합검사원 자격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2)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른 배출가스검사의 기술인력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종합검사원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4) 1)부터 3)까지 근무경력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이 되는 사람	종합검사 업무의 총괄
종합검사원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제1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	1) 정밀검사의 실시 및 적합 여부 판정 2) 검사 시설 및 장비 관리

비고

1. 종합검사 기술인력은 제18조에 따른 종합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고전원전기장치의 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전원전기장치 등 취급자 안전교육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시행하는 고전원전기장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기술인력이 시행하여야 한다.

나. 확보기준

1) 종합검사책임자: 검사소당 1명 이상

2) 종합검사원(종합검사책임자를 포함한다)

가) 종합검사대행자

검사진로당 연간 검사대수	검사진로당 종합검사원 수
7천대 미만	3명 이상
7천대 이상 1만 5천대 미만	4명 이상
1만 5천대 이상 2만 5천대 미만	5명 이상
2만 5천대 이상	6명 이상

나) 종합검사진정정비사업자

검사소당 월간 검사대수	검사소당 종합검사원 수
300대 이하	2명 이상
300대 초과 800대 이하	3명 이상
800대 초과 1천500대 이하	4명 이상
1천500대 초과	5명 이상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연 락 처	(044) 201 - 3858